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## 意匠 拒絕查定

〈大法院 第2部 判決〉(1985.10.22)

事件番號 : 85후 29

裁判長 : 정 태 균

關與法官 : 신 경 철 · 김 형 기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 : 한국음료(株)(代表 : 이 동 열)
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特許廳長

3. 原審決 : 特許廳 1985. 1. 29字, 1983年 抗告審判(絶) 第607號 審決

4. 主 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부담으로 한다.

5. 理 由 :

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意匠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美的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意匠의 類似여부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 될 美感과 인상의 類似性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意匠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類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(당원 1983.6.28 선고 82후 76 판결 참조, 意匠登錄을 받으려면 그 意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등록된 意匠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意匠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. (意匠法 第5條 第2項)

기록에 의하면 審判請求人들이 出願한 1982年 意匠登錄出願 第9013號 意匠은 음료포장용 강통틀레의 윗부분은 빨강색, 아랫부분은 여러개의 가로로 된 빨강색 띠를 배치하고 그 위에 사과를 1/4가량 잘라낸 모양을 포함한 음료포장용기에 관한 意匠이고, 그 出願前에 登錄된 第21784號 意匠은 음료포장용 강통틀레의 윗부분은 새로로 초록, 노랑, 초록색 순서로 3선의 띠가 있고 그 3선의 띠중간에 주황색 원판속에 들어있는 해태

무늬가 있으며 그 중간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는 초록색과 노랑색을 4회 연속 반복한 중앙에 사과를 표현한 意匠으로서, 兩意匠은 배치되어 있는 띠와 사과모양 및 해태무늬의 유무 등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兩意匠에 있어 모든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는 아랫부분에 배치된 띠와 그 띠위에 그려진 사과의 모양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해 볼 때 兩意匠의 띠와 그 위에 표현된 사과의 모양이 類似하여 그 요부가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며, 本願意匠은 기등록된 意匠과 색상에 차이가 있을 뿐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本願意匠이, 意匠法 第5條 第2項에 해당되어 登錄될 수 없는 것이다 하여 이를 拒絕查定한 初審決을 유지한 原審審決의 조치는 정당하고, 原審審決에 意匠의 類似性 및 創作性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理由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,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인 審判請求人 부담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 <○>